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7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3401 지방세 감면청구 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의료법인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7구합22161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1. 2.
판 결 선 고	2018. 11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12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8,538,820원의 감면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7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

가.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행과 제18면 제3행 중에 있는 각 "법률 제17781호"를 각 "법률 제14481호"로 수정한다.

나.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6~7행 중 "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"을 "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2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"으로 수정한다.

다. 제1심 판결문의 제15면 중 제14~19행 부분('설령' 이하의 부가적 판단 부분)을 삭제한다.

라. 제1심 판결문의 제16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설령,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목적, 신축 경위, 신축 시기, 규모 및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이 사건 건물이 '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'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'C요양병원'을 운영한 날로부터 약 4년 후에 신축되었으므로, 원고의 의료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도 아니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7

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제정한 'H생활관 운용규정' 제1조는, 이 사건 건물이 C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임을 명시하고 있다.

③ 이 사건 건물의 기숙사는 총 16개 호실에 28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2017. 10. 현재 2명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, 그 거주자들도 주로 간호사들이다. 위 거주자들은 의료업에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나 원고가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그들의 기숙사 거주 자체가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한다고 볼 수는 없고(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), 위 기숙사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.

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, 이는 간호사 등이 업무 시간 외의 휴식이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후생복지시설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,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그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법령상 의료업무가 아닌 부대사업에 관한 것이거나, 의료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 내지 생활지원 수단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,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7

재판장 판사 정용달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